

<p>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입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告)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,</p> <p>서울특별시립으로 '95학년도 2학기중에 국민학교 6개 학교를 신설하고, 행정구역 개편과 현행 학교위치와 일치하도록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둘째,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국민학교는 동부교육청 관내 중랑구 목동의 원목국민학교, 중랑구 신내동의 봉화국민학교와 신현국민학교, 북부교육청 관내 노원구 공릉동의 용원국민학교, 강서교육청 관내 양천구 신정동의 은정국민학교와 양천구 목동의 목원국민학교입니다.</p> <p>다음으로 '94년 12월 22일 제정공포된 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”에 의거 조례내용 중 국민학교 50개교, 중학교 26개교, 고등학교 4개교, 유치원 3개원 등 총 83개교를 행정구역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이와 함께 그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부 혼용되어 온 경우라든가 개교후 오랜시일이 경과된 학교이거나 또는 택지개발지역 등에서 지번이 변경되었거나, 확정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.</p> <p>법정동으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는 국민학교 37개교, 중학교 21개교, 고등학교 18개교, 유치원 10개원 등 총 86개교이고,</p> <p>학교설립후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지번이</p>	<p>변경되었거나 확정됨으로써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는 국민학교 73개교, 중학교 37개교, 고등학교 11개교,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, 유치원 2개원 등 총 125개교이며,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>셋째로, 조례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·운영한다”라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.</p> <p>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告)</p> <p>1. 개정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 1995년 5월 1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개정사유</p> <p>○ 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6개교를 1995학년도 제2학기 개교예정으로 신설하고,</p> <p>○ 행정구역 개편 및 현행학교 위치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변경코자 함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○ 국민학교 6개교를 신설함[별표 1]</p> <p>—신설학교명: 원목, 봉화, 신현, 용원, 은정, 목원</p> <p>○ “서울특별시광진구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(’94.12.22)”공포 및 학교 위치 법정동으로의 일원화 등에 따라 각급학교의 위치를 변경함.</p>
--	---